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, 준공업지역,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개정
 - 준주거지역, 준공업지역,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
(안 제33조, 별표6~10, 별표13, 별표19)
 -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, 노인복지관)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용적을 완화
(안 제64조 제5항 신설)

-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행령에 따름(안 제19조)
-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어 조림일 규정 삭제, 입목축척, 기준 지반고의 정의를 재설정하고, 경사도 별표 규정 삭제
(안 제22조, 별표25)
-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상 분할제한면적에 따르며, 재분할에 대한 경과년수 등을 기획부동산에 한하여 제한
(안 제26조, 별표26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설치 완화(안 제33조, 별표4)
- 준주거지역내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m 이외 지역 가능(안 제33조, 별표6)
-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,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m 이외 지역 가능(안 제33조, 별표7~9)
-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을 60퍼센트로하고, 종교시설 가능 완화
(안 제60조, 안 제33조, 별표22)
-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제한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, 의료시설(격리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, 운동시설 가능 완화(안 제51조)
-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을 400퍼센트로 완화(안 제64조)
- 위원회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, 회의록의 경우 30일 이후 공개
(안 제71조, 안 제75조의 2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1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시행령
- 2)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붙임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’은,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개정하고,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,
-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기준 및 일률적 규제적용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, 구미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, 자치법규 개선 과제 이행,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사례 등을 반영하고,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